

유기사실 [] 인정
[] 불인정 통지서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최종승선일	
	유기사실인정 신청일	
선박상세	선박소유자 성명(법인명)	선박소유자 생년월일(법인번호)
	선박명	선박번호
	선박 종류	총톤수
	항해구역	승선 선원수
유기 구제비용 미지급액	송환비용	
	송환수당	
	그 밖의 비용	
불인정 사유 (해당되는 경우)		

귀하가 제출하신 유기사실인정신청은 「선원법 시행령」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([] 인정, [] 불인정) 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해양수산청장
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
해양수산사무소장

직인

※ 참고사항

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.